

예수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6.3.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 과정 관련 여부	비고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 술고 사	실기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고사	기타			
수시	일반전형	자연과학 계열 (간호학 부)	미실시						×		
	지역인재전형		미실시						×		
	기회균형 (정원내)		미실시						×		
	기회균형 (정원외)		미실시						×		
정시	일반전형		미실시						×		
정시 (재외국 민과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2%)		실시		○					×	
	북한이탈주민		실시		○					×	
	전교육과정 이수자		실시		○					×	
	부모모두외국 인인외국인	실시		○					×		

※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2%),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 지원자 없음(면접·구술고사 미실시)

- 대학별고사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등 모든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중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로 정의
- 면접·구술고사를 진행하지만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문항을 출제한 모집단위 면접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대학별고사(면접)’는 학생의 지원동기, 전공적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질문하는 형식(교과지식과 관련 없음)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전형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법령이행	규정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대학 입시홈페이지-입학도우미-공지사항)	○	공개예정
영향평가 시행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분석	분석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해당없음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해당없음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해당없음		

3.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 해당사항 없음(지원자의 교과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는 전형 없음)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규정

- 우리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2024.05.01.)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함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수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입학 전형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5.1.> 1. 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방법, 전형일정, 모집인원 배분 등) 3.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정보의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제2조 제4호 관련사항 심의 시에는 외부위원(현직 고교 교사) 1인을 추가한다. <개정 2008.9.29., 2024.5.1.>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재정)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우리 대학 입시경비로 총당한다.
제6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2.28.>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관리 업무의 회피 및 제척)	<삭제 2023.2.28.>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 조직 구성

-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현직 고교교사(1명)를 포함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함

3. 202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위원회 구성	2025.03.	선행학습영향평가 관련 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	
면접 실시	2026.01.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면접 진행	지원자 없음으로 해당 전형 미실시
선행학습 자체평가 연수 참여	2026.0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자체평가 작성 연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2026.03.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현직 고교 교사 1인 포함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2026.03.31.까지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개(대학 홈페이지)	
선행학습 유발 요인 모니터링	연중 수시	선행학습 유발 요인 확인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 예수대학교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면접)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학생부 기재사항 및 교과 내용에 대한 면접·구술고사 성격이 아니며, 지원동기, 전공적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될 수 없음

<평가 영역 및 면접 질문(예시)>

평가영역	문항 예시	배점	비고
지원동기		100	
전공적성		100	
문제해결 능력		100	
의사소통 능력	상기 질문을 통해, 면접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및 태도,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100	
총평균		100	

Ⅳ.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1. 2026학년도 선행학습 평가 결과

- 본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없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라면 누구나 응할 수 있는 수준의 면접을 시행함
- 본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에서만 제한적으로 대학별고사(면접)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6학년도 해당 전형 ‘지원자 없음’으로 대학별고사(면접)를 실시하지 않음

2. 2027학년도 선행학습 반영 계획

- 대학별고사(면접)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고교 교과를 활용하는 평가는 추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임